

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6다41272 기타(금전)
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에이(a)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케이티노동조합

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대표자 위원장 정윤모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. 선고 2016재나35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


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6. 11. 24.

재판장	대법관	이상훈	<u>이상훈</u> 
	대법관	김창석	<u>김창석</u> 
주심	대법관	조희대	<u>조희대</u> 
	대법관	박상옥	<u>박상옥</u> 





정본입니다.

2016. 11. 24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김종필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
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
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